

2023년도

학생들과 편 꼭 알아야 할

#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



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
Chungbuk-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

# 어떻게 궁금하세요?



01

##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?

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 
학교안전사고에 대해  
보상해 드리는  
제도입니다.

01

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

학교에서  
안전사고가 있었나요?

02

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안내

학교폭력 피해가  
있었나요?

03

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 
심리치료 지원제도 안내

상담·심리치료 지원이  
필요한가요?

04

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 
사용방법 안내

신청방법을  
자세히 알고 싶어요!



## 이럴 때, 신청하세요

### ? 학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?

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.

「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」

### ? 교육활동이란?

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 내·외부활동이 해당됩니다.

- ▶ 특별·재량·과외·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등
- ▶ 수업과 등·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

「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」

### ? 보상 가능한 질병은?

- ▶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
- ▶ 일사병(日射病)
- ▶ 이물질의 섭취·접촉에 의한 질병
- ▶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」



##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
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,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,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합니다.

### 요양급여

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·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 
※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입원치료 중 간병료 청구 가능

### 장해급여

요양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청구

### 간병급여

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청구

### 유족급여

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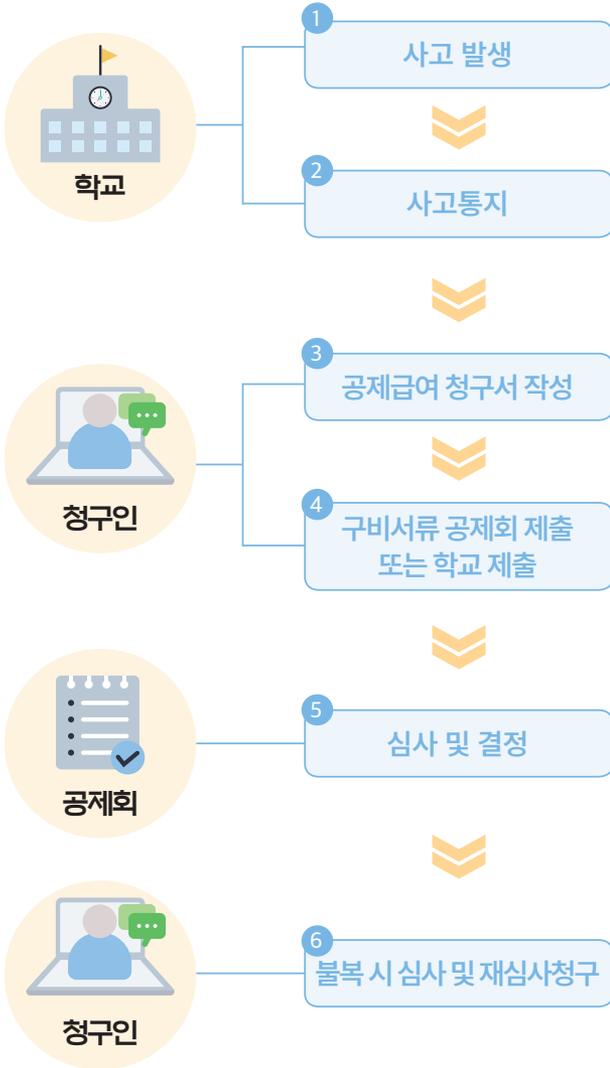
### 장례비

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 청구

### 위로금

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청구

##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



## 이렇게 청구하세요



### ? 누가?

학부모(보호자 등) 또는 학교

### ? 언제?

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한 이후 치료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 가능

※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음(중간청구 가능)

### ? 어떻게?

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([www.schoolsafe.or.kr](http://www.schoolsafe.or.kr))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



※ 자세한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(22p)를 참고해주세요

##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05



### 구비서류

- 1 공제급여청구서
- 2 진단서 (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)
- 3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4 진료비 세부내역서
- 5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)
- 6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
ex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※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간병료와 부대경비 청구 시 구비서류는 11p를 참고해주세요.

### 서류제출 방법

- 1 우편발송 :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
- 2 온라인 :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

## 이런 기준으로 지급됩니다

06



### 지급범위

요양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+ 비급여 일부 항목</li> <li>• 간병료 :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</li> <li>• 간병 부대경비 : 1일당 2만원</li> </ul>	「학교안전법 제36조」
장해급여	일실수익+위자료	「학교안전법 제37조」
간병급여	상시 :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수시 :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	「학교안전법 제38조」
유족급여	일실수익+위자료	「학교안전법 제39조」
장례비	평균임금의 100일분	「학교안전법 제40조」
위로금	4천만원	「학교안전법 제40조의2」

### 지급기한

- ▶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(보완할 서류가 없는 경우)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합니다.
- ▶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시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# 요양급여 지급기준 안내

- 1 사고 발생
- 2 사고 통지 학교
- 3 청구서작성 학부모/학교
- 4 서류제출 학부모/학교
- 5 심사 및 결정 공제회

[ ]외래 [ ]입원 (( [ ]퇴원[ ]중간)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

환자등록번호	환자 성명	진료기간	여건(공통일)진료
진료과목	질병군(DRG)번호	병실	부대 [ ] 야간 [ ] 공휴일
항목	급여	비급여	금액산정내용
	일부 본인부담금	본인부담금	①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
	본인부담금	본인부담금	② 환자부담 총액 (②-③)+④+⑤+⑥
진료료			③ 이미 납부한 금액 (⑦-⑧)
입원료			④ 납부한 금액 (⑨-⑩)
의사료			⑤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
방약 및 조제료			⑥ 환자부담 총액 (②-③)+④+⑤+⑥
주사료			⑦ 이미 납부한 금액 (⑦-⑧)
기분항목			⑧ 납부한 금액 (⑨-⑩)
약물비			⑨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
진찰료			⑩ 환자부담 총액 (②-③)+④+⑤+⑥
치과 및 수술료			⑪ 이미 납부한 금액 (⑦-⑧)
장사료			⑫ 납부한 금액 (⑨-⑩)
영상진단료			⑬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
방사선치료료			⑭ 환자부담 총액 (②-③)+④+⑤+⑥
치료재료대			⑮ 이미 납부한 금액 (⑦-⑧)
재활 및 물리치료료			⑯ 납부한 금액 (⑨-⑩)
정신과료			⑰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
정신과료			⑱ 환자부담 총액 (②-③)+④+⑤+⑥

급여	비급여
전액보상 ※ 상급병실료(1~3인실)제외	<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>에 따라 일부보상

※ 급여항목이더라도 부상과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 불가

▶ 비급여 항목 중 대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: 상급병실료, 도수·신장분사·체외충격파치료 및 이와 유사한 치료, 조직재생·강화 주사 및 부상과 무관한 영양제 주사 등

# 보상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땐?

## 청구절차



## 청구기한

### 보상심사

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
### 보상재심사

심사청구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

새롭게 추가된 제도가 궁금해요!

09

# 1 영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

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중에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「학교안전법 제36조」개정 ( ' 22.3. 시행)

## 지급대상

- ▶ **간병료** :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영양 중에 간병을 받으며, 부상·질병 상태가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할 경우
  - ▶ **부대경비** :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
- \* 피공제자의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자

**[주의]** 중환자실, 회복실, 폐쇄병동, 호스피스,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
※ 간병인정기간 및 대상은 심사에 의해 결정됨

## 구비서류

### 제출서류

- 영양 중 간병료, 부대경비 소견서
  - ※ [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▶ 이용안내 ▶ 서식]에서 다운로드 가능
- 간병인 신분증
-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
- (전문 간병인 활용 시) 간병료 지급 영수증, 전문 간병인 증명서
- (가족 간병인 활용 시) 가족관계증명서

※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새롭게 추가된 제도가 궁금해요!

10

# 2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

##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란?

학교안전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입·통원이 예상되는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

## 지원내용

교육 콘텐츠 지원	EBS 온라인 교육 콘텐츠(중학생)
학습 멘토링 지원	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
학습 기자재 지원	테블릿 PC

## 신청방법 (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)



문의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 
학교안전 콜센터(☎1688-4900)

## Q&A

### ? 안경파손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?

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, 안경 수리·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

### ? 휴대폰이 분실·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?

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 중 발생한 분실·파손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, 보상하는 휴대폰의 범위는 ‘휴대폰, 태블릿 pc, 노트북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문의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학교안전 콜센터(☎1688-4900)

### ?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

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,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? 치료가 계속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?

치료기간이 연장되어서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 횟수 제한이 없이 3년 이내로 연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.

### ? 졸업·전학을 한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?

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전학을 간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.

## 02

#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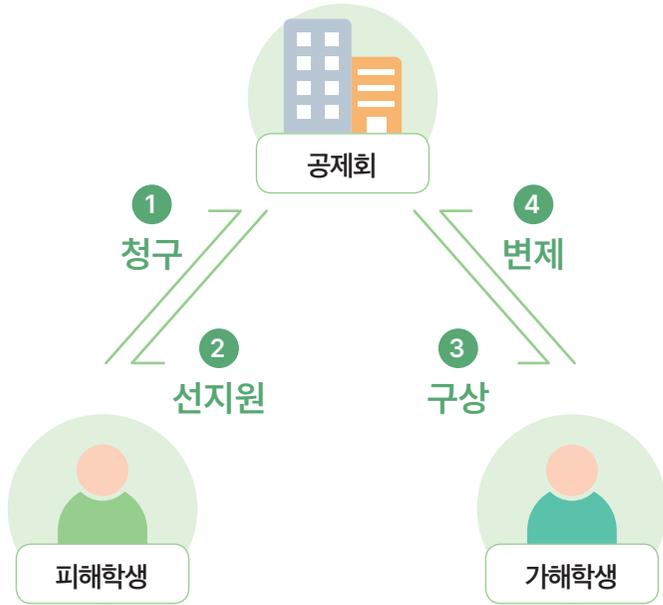
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,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추후 가해학생(보호자)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.



##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!

01

### 처리절차



### 청구절차

- 1단계** 학교폭력 사고통지(학교)
- 2단계**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서 작성(학부모 또는 학교)
- 3단계** 구비서류 제출(학부모 또는 학교)

## 이렇게 청구하세요

02

- 1 학폭 발생
- 2 학폭위 개최  
교육지원청
- 3 사고통지  
학교
- 4 **청구서작성**  
학부모/학교
- 5 서류제출  
학부모/학교
- 6 심사 및 결정  
공제회

### ? 누가?

학부모 또는 학교

### ? 언제?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,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실패 시

### ? 어떻게?

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([www.schoolsafe.or.kr](http://www.schoolsafe.or.kr))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 
※ 자세한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(22p)를 참고해주세요.

### 지원범위

보상범위	세부내역	인정기간
심리상담 및 조언	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또는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	2년 (보상심사위원회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)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	의료기관, 보건소, 약국 등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	
일시보호	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	30일

##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03



### ☞ 구비서류

구분		제출서류
공통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</li> <li>• 청구인 통장사본</li> <li>• 주민등록등본</li> </ul>
급여별 제출서류	심리상담 및 조언	• 치료기관의 계산영수증 및 상담내역서
	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	• 진료비계산서 및 세부산정내역서 등
	일시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</li> <li>•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</li> </ul>

※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☞ 서류제출 방법

- 1 **우편발송** :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
- 2 **온라인** : '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'에 서류 스캔본 첨부  
※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은 시·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## 심사 후 처리과정을 알려드려요

04



### ☞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?

- ▶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.
- ▶ 다만,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### ☞ 심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울때?

- ▶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재심사 기회가 있습니다.

※ 재심사제도가 궁금하다면 재심사제도 안내(10p)를 참고해주세요.

### ☞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?

- ▶ 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지원 내용과 추후 구상권을 행사함을 안내합니다.
- ▶ 아울러, 구상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구상합니다.

03

##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제도란?

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 
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의  
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기  
위해 상담과 심리 치료를  
지원해드립니다.



상담·심리치료를 지원해드립니다

01

###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

#### 상담·심리치료 지원 순서



#### 심의기구

국립학교 및  
재외한국학교

국립학교 및  
재외한국학교를 제외한  
일체 학교

학교안전공제중앙회

관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

# 이렇게 지원해드려요!

## 지원대상

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의 치료를 지원합니다.

※ 필수서류 :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

## 지원기간

1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나,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## 치료담당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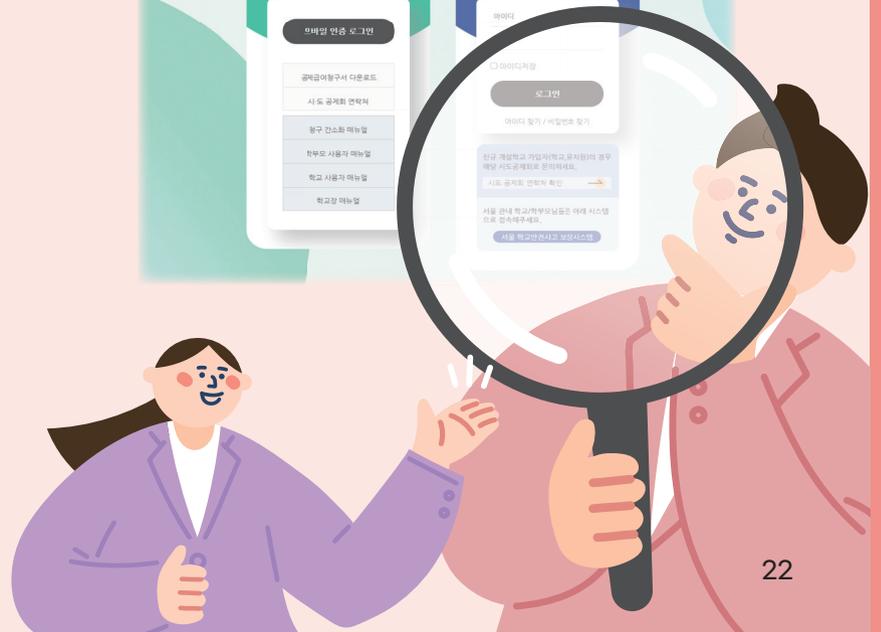
지정된 치료기관에서의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
-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
-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(교육청)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
-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·심리치료기관

※ 치료 지정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주세요.



#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안내



## 1 접속 및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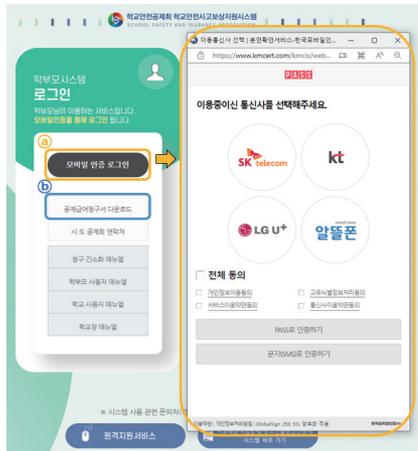
? 어떻게 접속하나요?

www.schoolsafe.or.kr 에 접속하세요.



접속 QR코드

?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나요?



“아니요!  
모바일 인증을 통해  
로그인하세요”

학부모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

a 모바일 인증 로그인 후  
시스템으로 접속됩니다.

※ 작동이 안 될 때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
(☎1688-4900)로 연락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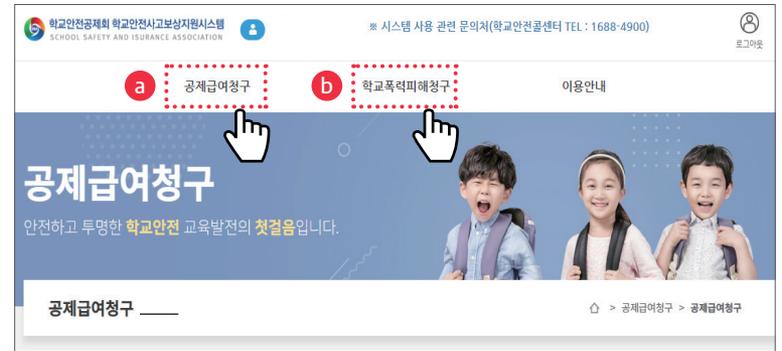
시스템 사용이 어렵다면?

b 공제급여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 가능합니다.

※ 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 가능



##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



a 공제급여청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
b 학교폭력피해 청구는 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.



c 청구서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
d 자녀정보 입력 후 e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
##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

사고발생번호	구분	사고자	사고발생시간	통지자	사고시간	사고장소	문서상태
2022-0405462	일반사고	강승우 / 1학년 1반	2022-11-04 12:08	강승우/	음력서간	시정각실	접수
2022-0405481	일반사고	강승우 / 1학년 1반	2022-11-03 09:11	강승우/	음력서간	복도	접수

- f** 문서상태가 [접수]로 되어 있는 경우, 해당 [사고발생번호]를 선택해주세요.  
 ※ [검색된 사고가 없습니다] 라는 팝업창이 생성되면, 해당 학교에 신속한 사고통지를 요청하세요.

참고 청구순서 : 사고발생 ▶ (학교)사고통지 ▶ (학교 또는 학부모)급여청구

사고발생번호	사고자	사고발생시간	청구자	청구구분	청구금액	결정금액	처리상태	제출구분	청구인 서명	지급내역
2023-0442466	김은주 / 1학년 1반	2023-01-01	서영호 / 부모	요양급여(치료비)	1,000,000	미접수	미접수	온라인	0	0

- g** 청구서 작성하기(기본정보) : 청구인, 공제가입자(학교장), 피공제자(학생) 정보를 기재해주세요.  
**h** 청구서 작성하기(기타사항) : 사고개요, 청구액, 계좌입력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주세요.

## 3 작성한 청구서 출력

사고발생번호	사고자	사고발생시간	청구자	청구구분	청구금액	결정금액	처리상태	제출구분	청구인 서명	지급내역
2023-0442466	김은주 / 1학년 1반	2023-01-01	서영호 / 부모	요양급여(치료비)	1,000,000	미접수	미접수	온라인	0	0

- i** 해당 사고발생번호 박스를 체크 후 **j**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.  
**k** 청구 진행상황 확인  
 ※ 처리상태 중 미접수는 공제회에서 확인하였으나 아직 처리 전 단계

**안전한**  
학교생활  
**행복한**  
학교생활

학교안전공제회가  
함께합니다.

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

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

전화 043-252-7109 홈페이지 [www.chungbuk.ssif.or.kr](http://www.chungbuk.ssif.or.kr)